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11.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9.11.18.

다. 상정일자: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19.1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윤민선】

가. 제안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의3)

-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조례 제1156호 부칙 제3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고시 실효시점이 도래하여 보상지 이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공원 기능을 보전하도록 하고,

- 이에 따라,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의 역할과 유사하므로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며 이는 서울시의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우리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감면 적용시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이는 문화재, 시장정비사업,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 타: 없 음

[참고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2.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